

의안번호	2126136
의 퇴 인	홍석준 의원
회 답 일	2024. 2. 8.
추계번호	23B516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법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그 외에 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 사항 완화,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 신설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 중 재정을 수반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음

- 전부개정법률안 조항 중 현행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향후 정책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 수반 요인에서 제외하였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1.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등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및 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서비스(이하 “위치정보서비스”라 한다)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의무규정
3	안 제6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소상공인, 창조기업 등으로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사업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의무규정
4	안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이 있는 경우(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기간 및 휴업 사실의 통보계획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3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안 제22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8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제7항)	
9	안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정에 관한 지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할 수 있음(제2항)	
10	안 제37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관계 물품·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4항)	
11	안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5조(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5조~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신고·변경·폐업 등의 업무는 현행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수행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조성</td><td>229</td><td>229</td><td>215</td></tr></tabl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2022	2023	2024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조성	229	229	215				
사업명	2022		2023	2024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조성	229		229	215										
2	안 제6조(소상공인 등의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3	안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4	안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 등)													
5	안 제13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자의 정보보호 조치 점검(파기실태 점검 포함) 등의 업무는 현행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수행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td><td>3,230</td><td>3,230</td><td>3,230</td></tr><tr><td>안전한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td><td>1,000</td><td>1,000</td><td>1,000</td></tr></tabl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2022	2023	202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3,230	안전한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1,000	1,000	1,000
사업명	2022		2023	202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230	3,230										
안전한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점검	1,000	1,000	1,000											
6	안 제22조(위치정보의 파기 등)													
7	안 제37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8	안 제28조(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28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 관련 업무는 현행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 지원체계강화’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수행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 강화</td><td>1,181</td><td>1,159</td><td>1,400</td></tr></tabl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2022	2023	2024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 강화	1,181	1,159	1,400				
사업명	2022	2023	2024											
위치정보활용긴급구조지원체계 강화	1,181	1,159	1,400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9	안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	• 미대상: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이 개정안의 취지 반영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td><td>1,170</td><td>1,170</td><td>1,970</td></tr></tabl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2022	2023	2024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170	1,170	1,970
사업명	2022	2023	2024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170	1,170	1,970							
10	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1	안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상세 사유

□ 안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대상으로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 조항은 위치정보산업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안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업무’와 ‘기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및 위치정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업무 위탁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두 단체에 업무 위탁을 하고 있지 않고 향후 업무를 위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개시 여부 및 업무 위탁 범위 등을 예측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전부개정법률안 조문 중 현행 조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문은 향후 정책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가정하여 재정 수반 요인에서 제외하였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전부개정 의 주요 내용¹⁾

□ 사업자 분류체계 일원화(안 제2조 및 제5조)

- (현행) 현행 사업자 분류 체계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등록)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신고)로 구분
 - 위치정보 기술발전 및 서비스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영세한 사업자로 직접 GPS 등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병행하는 실정
- (개정)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사업자 구분을 폐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하고,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전환
 - 사업자群별 상이했던 휴·폐업, 양수·합병 규제도 신고제로 일원화

□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 구분 폐지(안 제2조 및 제5조)

- (현행) 당초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 구분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허가)가 높아 사물위치정보만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차원의 조치('18년 위치정보법 개정)
- (개정) 위치정보사업자 진입규제가 신고제로 일원화되면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구분실익이 없어지므로 구분을 폐지하고 개인·사물 위치정보도 '위치정보'로 통합

구 분	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인	사물	개인	사물
진입	등록	신고	신고	-
양수·합병	인가	신고	신고	
휴·폐업	승인	신고	신고	



구 분	위치정보사업 ※ 정의 :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진입, 양수·합병, 휴·폐업	신고

※ 개정 후 특정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일부 규제 적용 배제(안 제47조)

1)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중 발췌

□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 (현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사물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또는 법제 16조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자*로 지정될 수 없음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위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 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의 원인행위를 한 사람과 그 대표자를 말함)
-

* 접근권한자 : 위치정보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적 조치의 일환으로, 종업원 중 일부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로 지정해야 함

- (개정) 위치정보사업 허가·등록 시 적용되던 규정으로 신고제 전환에 따라 사업자의 상시 신원조회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직원 결격사유 폐지
- ※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거나 혹은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신고 사항 완화(안 제5조제3항)

- 위치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빈번한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대신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변경 시 신고

현 행	개 정 안
1. 상호 2.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	1. 상호 2. 주된 사무소 소재지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 정기 실태점검 탄력적 운용(안 제37조제3항)

- (현행)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연 1회 이상 실태점검 의무

- (개정) 사업자 통합에 따른 점검대상 증가(320개 → 2,575개)를 고려하여, 실태점검 탄력적 운용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예 : 매출액 및 이용자수 기준을 적용한 사업자 등)하고, 사업자의 지나친 점검부담을 완화

□ 사물 위치정보사업자 규제적용 배제(안 제47조)

- 특정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 및 휴·폐업 신고 의무 외 제반 규제* 적용 배제(다만,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적용)
* 이용약관 공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목적 달성 시 위치정보 파기의무 등

□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 신설(안 제19조)

- (현행)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나 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한 규제 부재
* 이용약관 명시, 당사자 고지 및 동의 등
- (개정)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❶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❷이 법 또는 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직권 사업폐지 제도 마련(안 제10조제2항)

- 위치정보사업자가 ▲신고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휴·폐업신고 없이 1년 이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방통위가 직권으로 사업 폐지(신고 말소) 가능

[참고자료 2] 위치정보 사업자 등록 및 신고 현황('22년말 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위치정보 사업	개인 (등록)	183	18	37	38	44	320
	사물 (신고)	3	11	7	9	14	44
	소계	186	29	44	47	58	364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개인 (신고)	1,099	116	156	147	184	1,702
	소상공인등 (신고)	12	79	119	145	138	493
	소계	1,111	195	275	292	322	2,195
합 계		1,297	224	319	339	380	2,559

주: 폐업 사업자 수는 제외

자료: 방송통신위원회